

2023년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강원도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도내 본점 소재지를 둔 업력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 혁신기술분야 지원 - 제조업, 지식서비스
 - * 강원형 뉴딜사업(이모빌리티, 감염병 예방관련, 기후변화 대응(액화수소), 온라인 상점, 의료 빅데이터), 강원도 역점시책(특수 목적용 드론, 스마트 수산, 탄소중립 등) 관련 업종 우대
 -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선정규모: 10개사
- 사업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0월
- 운영기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최대 30백만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 * 기업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최대 30백만원, 자부담(총사업비의 20%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3. 3. 17.(금) ~ 4. 7.(금)(22일간),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글폼 제출(PDF 파일 제출)

URL : <https://forms.gle/KrBuMQamG4bTuSrh8>

* 신청기간 종료 후, 접수확인 문자 회신 예정(2일 이내 미확인시 문의요망)

○ 접수처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 주소 : (24252)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도헌글로벌스쿨 1층

- 문의처(이메일/유선) : e7312@ccei.kr / 033-248-7981

○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추진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3. 3.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참여자 신청·접수 (20일 이상) - 구글 폼으로 접수 진행
요건검토	'2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1차 서류평가	'23. 4. 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추천) 15개사 선발
2차 발표평가	'23. 4.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 시행)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비 적정성 심의 - 10개사 최종 선발 * 반드시 대표자가 발표평가 진행
협약체결	'23. 4.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선발자를 대상으로 협약 체결 진행
사업화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23. 5.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 ·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점검 및 최종평가, 회계감사	'23. 8.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중간 점검 (8월) · 창업기업 회계감사 11월 · 최종 사업평가 (11월)
사업비 정산, 성과조사	'2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조사, 사업비 정산서 검토 및 수정 보완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강원도 내 소재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 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 (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 (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 (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창업’ 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받는 자(기업)

가. 본 사업 협약일과 무관하게 강원도 지자체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협약 건 불인정(수혜 불가 or 사업 선택 필요)

나. 본 사업 협약일과 무관하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협약 건 불인정

*강원형 뉴딜 특화분야 창업지원사업

다. 본 사업 협약일 이전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지원 불가

※ 중단(중단처분.중도 포기자)포함

라. 본 사업 협약일 이후에 협약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단, 본 사업 협약 후에 발생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건에 대해서 운영기관에 공유해야 하며, 본 사업과의 사업화 지원금과 타 지원사업의 사업화 지원금의 같은 내용으로의 중복 사용 금지

○ 동사업 기참여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기업

○ 협약기간(사업기간 + 관리기간) 도내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기업(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이행보증보험은 사업기간과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가입

○ 선정 후 자부담(현금 + 현물) 납부가 불가능한 기업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요건검토(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1단계) 서류평가(1.5배수 선발) → 2차 요건검토 → (2단계) 발표평가 → 선정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안)>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운영기관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서류평가(1단계)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 기술·시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2차 요건검토		· 신청제외 대상여부 재확인
발표평가(2단계)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적정성 심의
최 종 선 정	운영기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공고) · 대상자에게 지원금 안내

<창업기업 선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주요평가내용
문제인식	20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30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등
성장전략	20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구성 및 기술	20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목표 적정성	10	시제품 개발 결과물의 적정성, 추진 계획 달성 가능성

○ 평가기준 :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1단계 평가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② 2단계 평가 : 발표평가

- * 강원형 뉴딜사업(이모빌리티, 감염병 예방관련, 기후변화 대응(액화수소), 온라인 상점, 의료 빅데이터), 강원도 역점시책(특수 목적용 드론, 스마트 수산, 탄소중립 등) 관련 업종 우대
-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 평가가 추가 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중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30백만 원(평균 27백만 원)
- 지원조건 : 도비 지원금, 자부담(총사업비의 20%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 사업비 구성(예) : 37,500천원(도비 30,000 / 자부담 7,500 *현금 3,750 현물 3,750)
- 지원 분야

비 목	비고	세부내용
외주용역비	총사업비 60% 이상	- 시제품 개발(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무형자산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실 소요비용
마케팅비		- 시제품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소요비용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광고, 전시 회(박람회) 참가 등
기자재 임차비		- 시제품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시험인증비		-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 시스템, 기업 인증 등에 소요 되는 비용
기술이전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시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 받는 계약
인건비	총사업비 30% 이하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 대표자와 현물로 잡은 직원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회계감사비	정액기준	- 창업기업의 협약 진행 시점에서 운영기관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의무계상 비용
재료비	총사업비 10% 이하 *현물 산정만 가능	-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 현물로만 산정 가능
인건비(대표자, 직원)		-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참여인력의 인건비
기자재비		- 시제품 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 기자재 임차비에 산정한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 산정 불가
사무실 임차비		- 창업기업의 창업 공간(사무공간)을 임차한 경우의 임차료 - 임차인은 창업기업 대표 본인 or 창업기업에 한함

□ 특화프로그램 운영

- 창업 도약기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네트워킹 등
- 도약기 기업의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6 참여기업의 의무 및 역할

-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운영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자부담(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 교육·멘토링 및 특화프로그램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기간 완료 후 1년의 관리기간 동안 도내 창업을 유지해야 하고,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기집행된 사업비를 환수 조치
- 사업기간 완료 후 3년 동안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도와 운영기관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창업 도약기기업 지원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 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도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 ②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반환 조치합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강원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팀원으로 참가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수혜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
-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처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81, ✉ e7312@ccei.kr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